

의안번호	2205768
의 퇴 인	안호영 의원
회 답 일	2024. 12. 13.
추계번호	24F5304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농어촌분야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농어촌분야에 적용되는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에 따라 지방세 세수는 5년간 총 636.9억원(연평균 127.4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- 귀농인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지방세수는 2025~2029년 5년간 총 133.9억원(연평균 26.8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 - 농어업인 직접 사용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면제 적용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지방세수는 2025~2029년 5년간 총 144.4억원(연평균 28.9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 - 한국농어촌공사의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 부동산 중 국가 등에 무상 귀속될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지방세수는 2025~2029년 5년간 총 81.9억원(연평균 16.4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 - 농어촌 주택계량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지방세수는 2025~2029년 5년간 총 124.0억원(연평균 24.8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 - 농지연금 담보농지의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지방세수는 2025~2029년 5년간 총 152.7억원(연평균 30.5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6~2029년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귀농인의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(제6조제4항)	-26.8	-26.8	-26.8	-26.8	-26.8	-133.9	-26.8
농어업인 등에 대한 용자관련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(제10조제2항)	-24.9	-26.8	-28.7	-30.9	-33.1	-144.4	-28.9
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관련 사업에 대한 재산세 면제 적용기한 5년 연장(제13조제3항)	-13.0	-14.5	-16.2	-18.1	-20.1	-81.9	-16.4

	2025	2026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(제16조제1항)	-32.3	-28.0	-24.3	-21.1	-18.3	-124.0	-24.8
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(제35조의2)	-21.8	-25.5	-29.8	-34.9	-40.8	-152.7	-30.5
합계	-118.8	-121.5	-125.8	-131.6	-139.1	-636.9	-127.4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조제4항 (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)	- 귀농인이 직접 경작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농지, 농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농업용시설을 취득하거나, 농지 등을 취득한 사람이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귀농인이 된 경우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의 50% 감면기한 5년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4.12.31.→(개정안) 2029.12.31.	
2	안 제10조제2항 (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감면 등)	- 농어업이 영농, 영림, 가축사육, 양식, 어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해 주민세(사업소분, 종업원분) 면제 적용기한 5년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4.12.31.→(개정안) 2029.12.31.	
3	안 제13조제3항 (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)	- 한국농어촌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 면제 적용기한 5년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4.12.31.→(개정안) 2029.12.31.	
4	안 제16조제1항 (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)	-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4.12.31.→(개정안) 2029.12.31.	
5	안 제35조의2 (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)	- 농지연금 담보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4.12.31.→(개정안) 2029.12.31.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6조제4항 (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)	○	
2	안 제10조제2항 (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)	○	
3	안 제13조제3항 (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)	○	
4	안 제16조제1항 (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)	○	
5	안 제35조의2 (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부칙에 따라 개정안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세수효과는 2025년부터 발생할 것으로 가정
- (안 제6조제4항) 귀농인의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실적은 최근 5년(2019~2023년) 연평균 감면실적이 향후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
 - 향후 취득세 감면액은 최근 5년의 연평균 감면액(26.8억원) 수준으로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추정
 - 통계청 「귀농어·귀촌인 통계」의 귀농가구수 추이를 볼 때, 귀농가구수의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음
 - －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 취득한 농지, 임야, 농업용 시설 혹은 해당 농지 등의 취득자가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귀농한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므로 귀농가구수

의 증감 여부는 귀농인이 취득한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실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, 최근 5년간 귀농가구수의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음

- (안 제10조제2항) 농어업인의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실적은 최근 5년(2019~2023년) 증가추세가 향후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
 - 향후 주민세 감면액은 최근 5년의 연평균 증가율(7.4%) 만큼 증가한다고 가정하여 추계
- (안 제13조제3항) 한국농어촌공사가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서 취득하는 부동산 중 국가 등에 귀속될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실적은 2023~2024년 전년대비 증가율이 향후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
 - 향후 재산세 감면액은 최근 2년간 연평균 증가율(11.6%) 만큼 증가한다고 가정하여 추계
- (안 제16조제1항)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2019~2023년 감면액 연평균 증감율에 따라 감소한다고 가정하여 추계
 - 취득세 감면실적이 감소하는 추세로 향후 감면액이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감율(Δ 13.3%) 만큼 감소한다고 가정하여 추계
- (안 제35의2조) 농지연금 담보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향후 2019~2023년 농지연금 누적 가입자수 연평균 증가율에 따라 감면액이 증가한다고 가정하여 추계
 - 재산세 감면실적 및 농지연금 누적 가입자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향후 감면액이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감률(14.1%) 만큼 증가한다고 가정하여 추계

3. 상세 추계내역

가. 귀농인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(안 제6조제4항)

(1) 제도 개요

- 귀농인이 직접 경작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농지, 농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농업용시설을 취득하거나, 해당 농지 등을 취득한 사람이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귀농인이 된 경우 취득세의 50%를 감면
 - 귀농인이란 농촌 이외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1년 이상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며, 귀농일 이전 1년간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(「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3조제5항)
 - 2021년 세법개정으로 감면 대상이 되는 자경농민 취득 농지 범위가 확대(직접 경작 목적→직접 경작 또는 사용할 목적의 농지)되고 취득세 감면 요건이 변경(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농지 등을 취득한 경우→농지 등의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귀농인이 된 경우도 포함)
 - 적용기한: (현행) 2024. 12. 31. → (개정안) 2029. 12. 31.

(2) 추계방법

- 향후 취득세 세수효과는 최근 5년(2019~2023년) 감면실적의 연평균 수준을 따른다고 가정하여 추계
 - 귀농인의 농지 등에 대한 최근 5년(2019~2023년) 연평균 취득세 감면실적은 26.8억원 수준
 - 귀농인의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실적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년대비 증감률이 △26.4%~13.1%로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음

[표 2] 귀농인의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실적: 2019~2023년

(단위: 억원)

	2019	2020	2021	2022	2023
감면실적	26.5	26.0	29.4	30.0	22.0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, 각 연도

- 귀농가구수의 증감 여부는 귀농인이 취득한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실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, 최근 5년간 귀농가구수의 증감추이 또한 일정하지 않음

[표 3] 귀농가구수: 2019~2023년

(단위: 가구)

	2019	2020	2021	2022	2023
귀농가구수	11,961	11,422	12,489	14,347	12,411

자료: 통계청, 「귀농어·귀촌인 통계」 각 연도

(3) 추계결과

- 귀농인의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함에 따라 지방세 수는 2025~2029년간 총 133.9억원(연평균 26.8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4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취득세, 2025~2029년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귀농인의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 연장 (제6조제4항)	-26.8	-26.8	-26.8	-26.8	-26.8	-133.9	-26.8

나. 농어업인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면제(안 제10조제2항)

(1) 제도 개요

- 농어업인 등이 영농, 영림, 가축사육, 양식, 어획 등에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면제
 - 일반적인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(사업소분, 종업원분)는 다음과 같음
 - (사업소분) 기본세액 + 사업소 연면적 기준 부과
 - * 기본세액: (개인) 5만원, (법인) 출자금액에 따라 5~20만원
 - ** 연면적에 대한 세율: 1㎡당 250원
 - (종업원분) 종업원 급여총액의 0.5%
 - 적용기한: (현행) 2024. 12. 31. → (개정안) 2029. 12. 31.

(2) 추계방법

- 향후 주민세 세수효과는 최근 5년(2019~2023년) 감면실적의 증가추세가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 - 농어업인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감면실적은 최근 5년

(2019~2023년) 연평균 감면액 증가율은 7.4%

- 다만, 행정안전부는 주민세 감면에 관한 요건·대상 등의 제도개편도 없었으며, 지역마다 연도별 증감 추세 또한 불규칙하여 특정 원인으로 인해 최근 주민세 감면실적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함

[표 5] 농어업인 직접 사용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감면실적: 2019~2023년

(단위: 억원)

	2019	2020	2021	2022	2023
감면실적	16.2	19.5	23.5	28.4	21.6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, 각 연도.

(3) 추계결과

- 농어업인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면제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함에 따라 지방세수는 2025~2029년간 총 144.4억원(연평균 28.9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6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주민세, 2025~2029년

(단위: 억원)

구분	2025	2026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농어업인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면제 기한 연장 (안 제10조의제2항)	-24.9	-26.8	-28.7	-30.9	-33.1	-144.4	-28.9

다.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(안 제13조제3항)

(1) 제도 개요

-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한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 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될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
 - 적용기한: (현행) 2024. 12. 31. → (개정안) 2029. 12. 31.

(2) 추계방법

- 향후 재산세 세수효과는 최근 2년(2022~2023년) 증가추세가 유지된다

고 가정하여 추계

- 한국농어촌공사의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 부동산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될 부동산에 대한 최근 2년(2022~2023년) 전년대비 증가율은 11.6%
- 2018년 2.8억원에서 2021년 4.1억원으로 안정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22년 9.4억원, 2023년 10.4억원으로 증가
 - － 2018~2021년까지 감면액이 유사한 규모로 유지된 점을 감안하여, 향후 감면실적이 2022~2023년 연평균 증가율(11.6%)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

[표 7]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한 부동산 중 국가 등에 귀속될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실적: 2018~2023년

(단위: 억원)

	2018	2019	2020	2021	2022	2023
감면실적	2.8	3.0	3.2	4.1	9.4	10.4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, 각 연도.

(3) 추계결과

-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한 부동산 중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등에 귀속될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함에 따라 지방세수는 2025~2029년간 총 81.9억원(연평균 16.4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8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재산세, 2025~2029년

(단위: 억원)

구분	2025	2026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한 부동산 중 국가 등에 귀속될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(안 제13조제3항)	-13.0	-14.5	-16.2	-18.1	-20.1	-81.9	-16.4

라.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(안 제16조제1항)

(1) 제도 개요

- 농어촌 주택개량 대상자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

취득세를 감면

- 「농어촌정비법」에 따른 주택개량 대상자가 취득일 기준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서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본인 및 가족이 거주할 목적으로 연면적 150㎡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, 28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액 감면
-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범위
 - 신규 농어촌마을 건설사업, 농어촌마을 재개발사업, 농어촌 수질오염 방지사업, 정주생활권 개발사업, 빈집 정비사업, 농어촌 임대주택 공급, 농어촌 주택개량 등
- 2019년부터 감면요건을 강화하고 감면액 상한을 도입하였으며, 2022년부터는 과밀억제권역 내 주택취득시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신설
- 적용기한: (현행) 2024. 12. 31. → (개정안) 2029. 12. 31.

[표 9]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항(안 제16조제1항) 개정사항

	2018년 이전	2019년	2022년
거주요건	해당 지역 거주자	취득일 현재 해당 지역 거주자	과밀억제권역 내 취득 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
범위	전용면적 100㎡이하의 주택 (바닥면적 7배 이내의 부속토지 포함)	연면적 150㎡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	(좌동)
감면내용	취득세 면제	280만원 한도 내 감면	(좌동)

(2) 추계방법

- 향후 취득세 세수효과는 최근 5년(2019~2023년) 감면실적의 연평균 감소추세가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 -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실적은 2019년 76.3조원에서 2023년 43.1억원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며, 최근 5년(2019~2023년) 연평균 감소율은 -13.3%
 - 농어촌에 거주하는 인구가 감소하고, 주택개량 사업이 정체되면서 관련 감면실적은 지속적으로 감소

[표 10]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실적: 2019~2023년

(단위: 억원)

	2019	2020	2021	2022	2023
감면실적	76.3	68.0	58.7	51.3	43.1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, 각 연도.

(3) 추계결과

-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함에 따라 지방세수는 2025~2029년간 총 124.0억원(연평균 24.8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취득세, 2025~2029년

(단위: 억원)

구분	2025	2026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(안 제16조제1항)	-32.3	-28.0	-24.3	-21.1	-18.3	-124.0	-24.8

마. 농지연금 담보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(안 제35조의2)

(1) 제도 개요

-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하여 공시가격 6억원에 해당하는 세액을 한도로 재산세 감면
 - 일반적으로 농지는 재산세 저율 분리과세 대상이므로, 공시가격 6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은 29.4만원 수준
 - 6억원 × 70%(공정시장가액비율) × 0.07%(농지 분리과세 세율) = 29.4만원

(2) 추계방법

- 향후 재산세 세수효과는 최근 5년(2019~2023년) 증가추세가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 - 농지연금 담보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실적은 2019년 9억에서 2023년 16.2억원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연평균 증가율은 15.9%
 - 지속적인 농지연금 누적 가입자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농지연금 담보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실적이 증가하고 있음

[표 12] 농지연금 담보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실적: 2019~2023년

(단위: 억원)

	2019	2020	2021	2022	2023
감면실적	9.0	11.1	13.0	15.1	16.2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, 각 연도.

- 향후 농지연금 담보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액은 농지연금 누적 가입수 증가에 따라 매년 증가하고 있어 담보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실적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

[표 13] 농지연금 누적 가입자수: 2019~2023년

(단위: 건, %)

	2019	2020	2021	2022	2023	'19~'23년 연평균 증감율
가입자수	14,492	17,098	19,178	21,708	24,590	14.1

자료: 한국농어촌공사 제출자료

(3) 추계결과

- 농지연금 담보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함에 따라 지방세수는 2025~2029년간 총 152.7억원(연평균 30.5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4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재산세, 2025~2029년

(단위: 억원)

구분	2025	2026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농지연금 담보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(안 제35조의2)	-21.8	-25.5	-29.8	-34.9	-40.8	-152.7	-30.5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신미정	백경엽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신미정	02-6788-4837	mjshin@assembly.go.kr